안전확인 시험 · 검사 진행절차_유아용 섬유제품

KATRI

절차	세부내용	비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1. 안전확인 신고용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안전확인신고용 or 재시험용)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③ 확인서 작성(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제조업자 확인서 - 재시험 확인서 · 재시험 진행시 첨부 - 방한대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안전확인 신고서 2. 추가시험용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추가시험용) ② 제품설명서 ③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신고확인증 번호 있음) ④ 확인서 작성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3. 안전확인 재신고용 **(*기존 안전확인신고를 진행했던 안전인증기관에서만 재신고 가능)**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안전확인 재신고용 or 재시험용)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③ 확인서 작성(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제조업자 확인서 - 재시험 확인서 · 재시험 진행시 첨부 - 방한대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안전확인 신고서(*기존 신고확인증 번호 있음)**	- 붙임양식 참고 - 작성문의 : 인증사업팀 · 031-596-5670 **※안전확인신고서상 변경사유(신고인 정보 및 확인신고 내용)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미진행한 경우, 재신고(기존 신고 번호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신청접수 (방문 및 택배)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KATRI시험연구원 3층 인증사업팀** · 031-596-5670	- 접수증 이메일 발송 (수수료, 완료예정일) - 수수료는 접수 후 납부
시험·검사·발급	① 최소 시료수 3개 ② 시험기간: 업무일 기준 5일 (금속有: 8일)	- 시료 보완, 시험 항목 등에 따라 일정 조정
안전확인 신고접수	<제품검사 합격 후 진행> - **신고수수료(50,000) + 부본료(5,000) : 55,000원 (VAT 별도)** - 발급기간 : **업무일 기준 +1일**	- 신고문의 : 인증운영팀 · 031-596-5698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신고서 원본 우편발송(등기)	인수방법 선택

<앞면>

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예시본)

신청일 : 20 . . .

접 수 번 호		KIKO -			세금계산서	수취회사명	㈜0000
신청자	회사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대표자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사업자번호	123-45-67890
	주 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담당자	신청 담당자	F A X	031)000-0000		E-mail	0000@katri.re.kr
	T E L	031)000-0000	H. P	010-0000-0000		연락처	031)000-0000
	E-mail	0000@katri.re.kr					

어린이제품명(기준)	유아용 섬유제품(부속서 1)	모 델 명	필수 기재사항
제조국명	필수 기재사항	제조업체명	-국내제조의 경우:신청자와 제조업체명이 같아야함(*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업 필수) - 수입제품일 경우:영문 또는 한글로 기재
구 분 (필수 선택)	■ 외의류 □ 중의류 □ 내의류 □ 침구류 □ 신발류 □ 양말류 □ 장갑류 □ 모자류 □ 가방류 □ 신생아용품		
종 류(품목명) (필수 기재)	재킷(3.세부분류 표 참조)	조성섬유(필수 기재)	조성섬유 기재
염색 여부(필수 선택)	■ 예 □ 아니오	방염가공 여부(필수 선택)	□ 예 ■ 아니오
성적서 (부본수)	■ 국문 (부) □ 영문 (부)		
용 도	■ 안전확인 신고용 □ 추가시험용 □ 재시험용 □ 안전확인 재신고용 □ 품질관리용		
성적서 인수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 이메일 후 우편		
시료 처리	■ 폐기 □ 반환 (시험·검사 후 파괴된 제품) ※ 본 제품에 대하여 **시료처리에 "반환" 선택시** 시료의 인수통보 후 1개월 내 제품 인수가 없을 경우 폐기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험·검사항목	시료수	비고	시험·검사항목	시료수	비고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접수 시에는 별도로 시험·검사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시 필요 서류
① 시험·검사신청서 1부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검사용 시료 3개 ⑤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추가시험용인 경우)

○ 시험 진행 중 추가로 관련 서류, 시료, 수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은 이메일로 송부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의뢰신청 접수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 미 입금 시 결과 안내 및 성적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확인 신고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에는 유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에는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표시를 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모델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본 신청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신청서입니다. 따라서 기입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필수)

Katri 시험연구원

문의처 : 인증사업본부 인증사업팀
접수 : 031)596-5712
상담 : 031)596-5670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KATRI시험연구원 3층 인증사업팀

3. 세부분류

[표 1] 유아용 섬유제품의 세부분류

구 분	종 류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조끼, 톱바, 우주복, 가디건,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미술가운,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방한대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카페트,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양말류	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장갑류	장갑, 팔토시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빕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신생아용품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풋머프,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힙시트, 노리개젖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 비고** : 상기의 종류에 없는 섬유제품 또는 신유형 섬유제품이 보통의 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사용환경, 용도 등을 고려하여 **[표1]** 제품의 구분과 종류를 적용한다.

제 품 설 명 서[예시본] 유아용 섬유제품

[제품 사진 또는 컬러 이미지]

정 면
<제품정면칼라사진> * 별도의 사진파일 제출 가능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국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업체명	신청서와 동일
구 분	■ 외의류 □ 중의류 □ 내의류 □ 침구류 □ 신발류 □ 양말류 □ 장갑류 □ 모자류 □ 가방류 □ 신생아용품		
종류(품목명)	재킷	조성섬유	면/폴리에스터

※ 구분, 종류는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3. 세부분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 표시사항 (개별제품에 표시되는 내용)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겉감, 안감,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국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치수 (권장)	치수(권장)
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상 주의사항은 부속서 1 [별표 8]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KS K 0021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금속 액세서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속서 1 [별표 8](7)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속서 1 [별표 8](8)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안전확인 부속서36 제2부4.2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부속서 1 [별표 8(9)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표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부속서 1 [별표 8](10)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부속서 1 [별표 9]에 따른다. -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품하자 및 리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문의처, 소비자 상담실 등**
사용연령	36개월 미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에 따르고, 방한대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표시사항을 따른다.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단,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의·경고 문구 (해당되는 문구에 √ 표시를 해주세요)

□ 녹 및 피부 접촉주의사항	물 세탁시 녹이 발생할 수 있음 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
□ 불꽃주의 표시	불꽃 접근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
□ 작은부품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 신발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안전확인 신고서 (예시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전화번호 031-000-0000
	주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확인 신고 내용	어린이제품명 **유아용 섬유제품(부속서 1)**	품목분류번호(HS)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외의류(재킷),면/폴리에스터	제조업체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국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자 제시 모델명 신청서와 동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인

KATRI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신고확인증 번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KATRI시험연구원장 직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확인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